

《종합평가》

-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
 - 위원회 구성 및 모집공고 등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**채용절차 위반** 유형
 - 평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과도한 응시자격의 설정 등을 통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등의 **부당한 평가** 유형

- 이러한 위반사항으로 인해 정당한 자격을 갖춘 응시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탈락하는 대신 응시자격이 없는 특정인이 최종 합격하게 되는 등 대다수의 선량한 응시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, 이는 나아가 지방공공기관 전체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

- 이에 따라 특정감사 결과 확인된 위법·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및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, 채용과 관련한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기관감사 시 관련분야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겠음.

<<지적사항 요약>>

15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(주의·통보)

-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임·직원 303명(정규직 168명, 비정규직 135명)을 채용하면서
 - 24회 채용공고 중 16회에 걸쳐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10일까지 규정에 정하여진 공고기간보다 짧게 공고하였고,
 - 43차례 모두 위 기관 소속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
 - 인사위원회 또한 외부위원 없이 내부직원으로만 구성 운영하였음.

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에게

- 앞으로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채용공고기간을 준수하고, 면접심사위원은 「채용업무 지침」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의 1/2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**주의요구**
- 외부 인사위원을 1/2 이상 포함할 수 있도록 「인사규정」 등 개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**통보**

16 의사 채용절차 미이행 (주의)

-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총 38회에 걸쳐 의사 총 47명을 채용하면서
 - 채용계획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도 위 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의사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메디게이트에만 공고하여 채용하였음.

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에게

- 앞으로 의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지 아니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(서귀포의료원, 제주특별자치도)에 채용공고를 하지 아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

17 경력직 채용 부적정 (주의)

○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017. 8. 경력직 사무직 1명을 채용하면서

- 인사위원회의에서 채용하고자 직급을 결정하지 않은 채용시자격을 종합병원 청구심사 경력 2년 이상으로만 결정하여 공고한 후 같은 해 8. 1. 원장의 결재만으로 9급으로 결정하여 임용하였고,
- 그리고 최종합격자는 2015. 7.부터 위 병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지속적 친분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내부직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하고(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원무과장 포함)하여 면접전형을 진행하였음

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장에게

- 앞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직급을 명확히 하여 공고하고, 면접심사위원을 내부직원으로 구성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